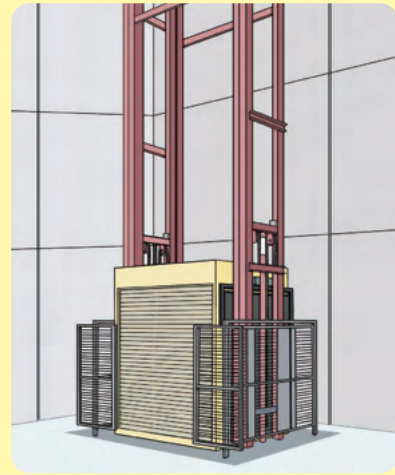




**최근 5년간('18~'22) 추락·끼임 사망자 35명**  
**“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”**  
 (적재하중 0.5톤미만)

2024. 3. 2.~2024. 9. 2.까지  
**적재하중 0.5톤미만**  
**산업용리프트**  
**안전검사 받으세요!**



✓ 안전검사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지금 사전컨설팅을 신청해주세요!!

**산업용리프트란?**

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 
 ※승강기와 유사한 구조로서 철골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의 기초 바닥면에 고정 설치된 기계

**적재하중 0.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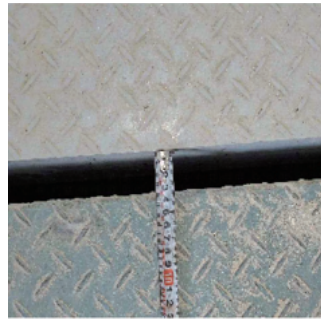
사전컨설팅	안전검사
<p><b>🔧 신청기간</b> 2023. 9. 1. ~ 2024. 3. 1.</p>	<p><b>📅 최초검사기간</b> 2024. 3. 2. ~ 9. 2.</p>
<p><b>📄 신청방법</b>                      산업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소유주가 가까운 안전검사기관으로 전화 또는 온라인 <a href="http://miis.kosha.or.kr">http://miis.kosha.or.kr</a> 신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 style="width: 50%;">· 대한산업안전협회 02-851-6452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· 한국승강기안전공단 055-751-0823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· 한국안전기술협회 1577-7514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·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544-3089</li> </ul>	
<p><b>📖 내용</b>                      안전검사기관이 유선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제도 및 검사신청 방법과 검사에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또는 재정지원 신청 안내</p>	<p><b>🔍 주요검사항목</b>                      · 승강로, 운반구, 권상기 등 기계장치                      · 낙하방지장치(3중), 과부하방지장치 등 안전장치</p>
<p><b>🎁 혜택</b>                      안전검사 불합격 시 개선을 조건으로 행정처분(사용중지 등) 유예,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용 리프트 설비개선 또는 교체시 비용 70%지원 연계</p>	<p><b>🕒 검사주기</b>                     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매 2년 마다</p>

✓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사업장은 행정처분(과태료 1천만원 이하)을 받을 수 있으니 2024. 9. 2.까지 안전검사를 받고 산업용 리프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#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주요 검사항목



① 화물반입구 및 방호울 (높이 1.8m 이상)



② 운반구와 승강로의 간격 (35mm 이하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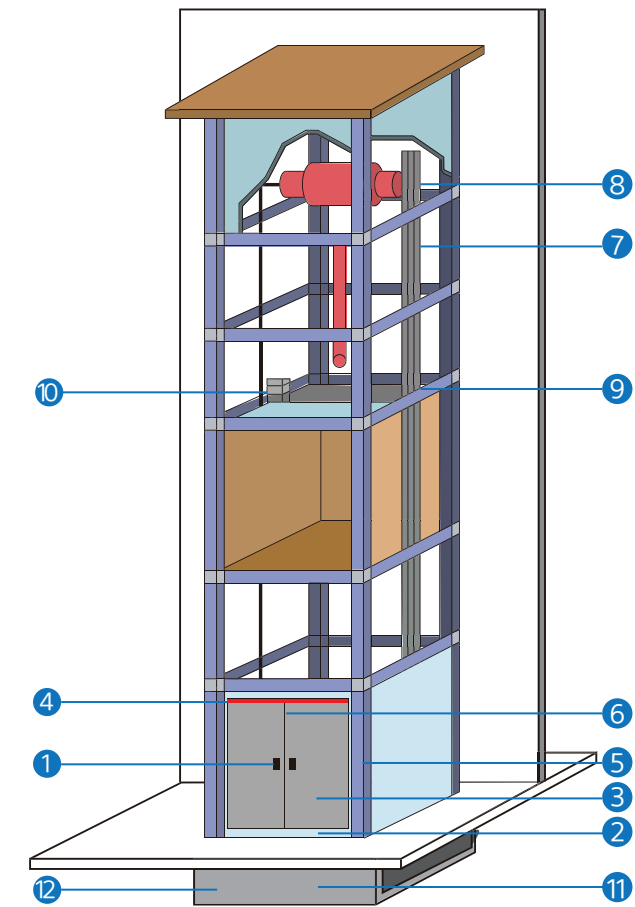
③ 표시내용 부착 (적재하중, 제조연월 등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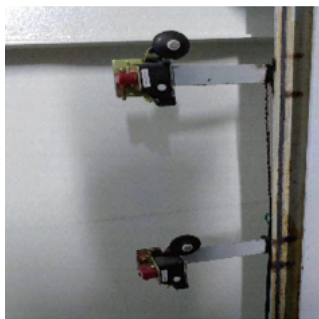
④ 경보장치



⑤ 전기장치 및 비상정지장치



⑥ 출입문 인터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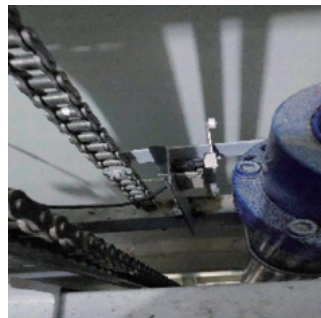
⑦ 권과방지장치



⑧ 과부하방지장치



⑨ 낙하방지장치



⑩ 로프(체인) 이완 감지 장치



⑪ 충격완화장치



⑫ 안전블록

☑️ 상기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, 자세한 안전검사 기준은 아래 고시를 참고바랍니다.

- 유압식, 랙 및 피니언식 산업용 리프트 : 「안전검사 고시」(고용노동부고시 제2023-47호) [별표 3]

- 권동식, 원치식 일반작업용 리프트 : 「안전검사 고시」(고용노동부고시 제2019-16호) [별표 3]